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 |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 |
| 로고 | Licensing and RegulationPO Box 3724Seattle, WA 98124-3724전화번호: 360-664-1600www.lcb.wa.gov |  |

**APPLICATION FOR ADDED ENDORSEMENT**

**추가 배서 신청서**

|  |
| --- |
| 1.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 |
| 1. WSLCB를 수령인으로 수표를 발행하십시오.
 |
| 1. 수표 발송 주소: Licensing and Regulation, PO Box 3724, Seattle, WA 98124-3724.
 |
| 1. 문의사항은 고객 서비스 번호 360-664-1600로 연락하십시오.
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현재 주류 면허 번호:      | 주류 면허 유형:      | UBI 번호:      |
| 면허 소지자 이름(복수 가능):      |
| 우편 주소:      |
| 담당자:      |  |
| 이메일 주소:      | 전화번호:      |

| **소매 면허****배서 제목** | **설명** | **수수료** |
| --- | --- | --- |
|  |  |  |  |  |
| **[ ]**  |  | **알코올 포함 사탕** | 스낵 바 면허가 포함된 식료품점에서 알코올 1%~10%가 함유된 과자류를 무게 단위로 만 21세 이상 성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. | 수수료 없음 |
|  |  |  |  |  |
| **[ ]**  |   | **맥주 및 와인 전문점 그라울러**  | 맥주 및 와인이 전체 매출의 50%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류 재고를 $15,000 이하로 유지하는 맥주 및 와인 전문점식료품점 면허 소지자가 생맥주, 미드주 및 사과주를 크기와 관계 없이 본인의 위생 용기를 제공하는 구매자나 면허 소지자 또는 제조자가 제공한 용기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. | 수수료 없음 |
|  |  |  |  |  |
| **[ ]**  |  | **맥주 및 와인 전문점 케그 판매** | 맥주, 와인 전문점 면허 소지자가 허가 사업장 외 소비를 목적으로 생맥주를 케그나 4갤런 이상인 기타 용기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. | 수수료 없음 |
| **[ ]**  |  | **맥주 및 와인 전문전 와인 소매 리셀러** | 맥주 및 와인 전문점 면허 소지자가 허가 사업장 내 주류 소매업자에게 허가 사업장에서 재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와인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재판매를 위한 와인 매입을 허용하는 연방 주류 관리법에 의거하여 연방 기본 허가가 요구됩니다. 본 배서를 포함한 맥주 및 와인 전문점 면허 소지자가 허가 사업장 내 주류 소매업자에게 와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**기본 허가는 각 장소마다 필요합니다**. 본 허가는 주류 및 담배 조세 상거래국 웹사이트 [**https://www.ttbonline.gov/permitsonline/**](https://www.ttbonline.gov/permitonline/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. | $110 |
| **[ ]**  |  | **출장 주류 제공** | 증류주, 맥주, 와인 식당, 맥주 및 와인 식당, 스포츠 오락 시설 및 맥주 및 와인 태번 면허 소지자가 특정 날짜에 현재 허가 받지 않은 위치의 행사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.  | $ 350 |
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
| **[ ]**  |  | **출장 제공 면허 사본** | 워싱턴 주류 및 대마초국(WSLCB)이 수립한 조건에서 증류주, 맥주, 와인 식당, 맥주 및 와인 식당 또는 맥주 및 와인 태번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다른 사업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, 이는 해당 사업장을 해당 면허 소지자가 소유하거나 임차권으로 관리하는 상태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| $ 20 |
|  |  |  |  |  |
| **[ ]**  |  | 식료품점 맥주/와인 시음 | 식료품점 면허 소지자가 허가 받은 사업장에서 맥주 및 와인 시음을 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상점은 규모가 1만 평방 피트 이상인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.(예외도 허용 가능)  | $ 200 |
|  |  |  |  |  |
| **[ ]**  |  | 식료품점 그라울러 | 맥주 및 와인이 전체 매출의 50%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류 재고를$15,000 이상으로 유지하는 식료품점 면허 소지자가 생맥주, 미드주 및 사과주를 크기와 관계 없이 본인의 위생 용기를 제공하는 구매자나 면허 소지자 또는 제조자가 제공한 용기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.  | $120 |
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
| **[ ]**  |  | 식료품점 와인 소매 리셀러 | 식료품점 면허 소지자가 허가 사업장 내 주류 소매업자에게 허가 사업장에서 재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와인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재판매를 위한 와인 매입을 허용하는 연방 주류 관리법에 의거하여 연방 기본 허가가 요구됩니다. 해당 장소에서 본 배서를 포함한 식료품점 면허 소지자가 허가 사업장 내 주류 소매업자에게 와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**기본 허가는 *각* 장소마다 필요합니다**. 본 허가는 주류 및 담배 조세 상거래국 웹사이트 [**https://www.ttbonline.gov/permitsonline/**](https://www.ttbonline.gov/permitsonline/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.  | $166  |
|  |  |  |  |  |
| **[ ]**  |  | **해외 수출업자** | 식료품점 면허 소지자가 해외에 맥주, 도수가 높은 맥주, 와인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.맥주 및 와인은 면허를 소지한 워싱턴 배급업자에게 매입하여 미국 외 국가로 수출해야 합니다. | $ 500 |
|  |  |  |  |  |
| **[ ]**  |  | **증류주 샘플 제공 제한** | 책임있는 주류 판매자 프로그램(RESPONSIBLE VENDOR PROGRAM (RVP))에 등록한 증류주 소매업 면허 소지자가 허가 사업장 내 밀폐된 공간에서 증류주 샘플을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 | 수수료 없음 |
| **[ ]**  |  | **클럽 외 행사** | 증류주, 맥주, 와인 회원제 클럽 및 대중에게 개방하지 않는 증류주, 맥주, 와인 식당 면허 소지자가 클럽의 주류를 클럽 외 회원 후원 행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* 초대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.

  | $ 900 |
| **[ ]**  |  | **사업장 외 소비용 판매*** **맥주 및 와인 식당**
* **태번**
 | * 맥주 및 와인 식당 및 태번 면허 소지자가 맥주, 와인 및 사과주를 허가 사업장외 소비를 목적으로 원래 용기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.
* 생맥주, 미드주, 사과주를 용량이 4갤런 미만인 위생 용기를 자체 제공하는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.
* 생맥주를 케그 또는 용량이 4갤런 이상인 기타 용기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.
 | $ 120 |
|  |  |  |
| **[ ]**  |  | **사업장 외 소비용를 위한 자체 표시 와인 판매*** **스포츠 오락 시설**
 | 스포츠/오락 시설 면허 소지자가 자체 표시 와인을 허가 사업장 외 소비를 목적으로 개봉되지 않은 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. | $ 120 |
| **[ ]**  |  | **사업장 외 소비를 위한 와인 판매*** **증류주, 맥주 및 와인**
* **증류주, 맥주 및 와인 회원제 클럽**
* **맥주 및 와인 회원제 클럽**
 | 증류주, 맥주, 와인 식당, 증류주, 맥주, 와인 회원제 클럽, 또는 맥주 및 와인 회원제 클럽 면허 소지자가 사업장 외 소비를 목적으로 와인을 개봉되지 않은 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. | $ 120 |
| **[ ]**  |  | **증류주, 맥주, 와인 식당의 맥주통 포장 판매** | 증류주, 맥주, 와인 식당 면허 소지자가 허가 사업장 외 소비를 목적으로 생맥주를 맥주통 또는 용량이 4갤런 이상인 기타 용기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위생 용기를 제공하는 구매자에게,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용기에 생맥주, 미드주 및 사과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. (일반적으로 그라울러라고 함.) | $ 120 |
| **[ ]**  |  | **직접 배송을 받는 워싱턴 소매업자** | 면허를 소지한 워싱턴 소매업자가 와인이나 맥주, 증류주를 국내(주 내) **또는** 워싱턴 소매업자에게 생산 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미국 승인서(COA)를 보유한 와인 양조장, 양조장, 소형 양조장, 증류주 제조시설, **또는**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 배송을 위한 승인서(COA)를 보유한 해외 또는 국내 제품 취급 증류주 도매업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.[ ] 주 내 와인 양조장, 양조장, 소형 양조장, 증류주 제조시설의 제품만 취급합니다.**또는**[ ] 주 내 **및** 주 외 미국 와인 양조장, 양조장, 소형 양조장, 증류주 제조시설의 제품을 취급합니다. | 수수료 없음 |

| **소매 외 면허****배서 제목** | **설명** | **수수료** |
| --- | --- | --- |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[ ]**  |  | **승인서(COA)****워싱턴 소비자에게 배송** | 승인서(COA)를 보유한 미국 와인 양조장에서 직접 생산한 와인을 워싱턴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미국 와인 양조장은 시설이 위치한 주 및 TTB에서 와인 양조장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. | 수수료 없음 |
| **[ ]**  |  | **승인서(COA)****워싱턴 소매업자에게 바로 배송**  | 승인서(COA)를 보유한 와인 양조장, 양조장, 소형 양조장, **또는** 증류주 제조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와인, 맥주, 증류주를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배송 승인을 받은 워싱턴 소매업자에게 바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.미국 또는 해외 제품에 대한 증류주 COA 보유자가 소매업자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습니다. 미국 와인 양조장, 양조장, 소형 양조장, 증류주 제조시설 또는 증류주 COA 보유자는 해당 시설이 속한 주와 TTB에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  | $100 |
| **[ ]** **[ ]**  |  | **국내 맥주 와인 양조장, 소형 양조장 사업장 내 소비-신규** **2020년 6월 11일부터 유효****농산물 직매장 판매** | 면허를 받은 국내 와인 양조장에서 워싱턴에서 생산된 맥주제품을 사업장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별적인 서빙으로 판매 할 수 있습니다. 맥주 종류는 3 가지로 제한됩니다.면허를 받은 국내 맥주 양조장 또는 소형 양조장에서 워싱턴에서 생산된 와인제품을 사업장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별적인 서빙으로 판매 할 수 있습니다. 와인 종류는 세가지로 제한됩니다. 면허를 소지한 국내(주 내) 양조장, 와인 양조장, 소형 양조장, 증류주 제조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맥주, 와인, 증류주를 허가 사업장 외 소비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농산물 직매장에서 병 단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맥주나 와인 샘플은 2온스 미만으로, 1일 소비자 1인당 최대 2온스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.증류주 샘플 제공은 금지됩니다.  | $ 75 |
|  |  |  |  |  |
|  |  |  | **동봉 금액:**  | **$** |  |